공 개

의안번호	제 236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9. 2. (제 15 차)

의결사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승인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2.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6.3.18,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저PBR기업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독립이사’ 제도 등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저PBR기업 선정요건 정비

(유가상장 §157의2, 코스닥상장 §47의2)

나. 개정 상법상 ‘독립이사’ 등 반영

(유가상장 §2①17호, §29①8호, §42, §47①, §48①, §68①5호, §77, §78, 코스닥상장 §2①19호, §19①, §28①7호, §43①8호, §43②4호, §43조③10호, §53조①7호, §62①5호, §70①6호)

다. 개정 상법상 ‘감시위원회 설치·구성 의무’ 등 반영

(유가상장 §47①6호, §48①6호, §78②, 코스닥상장 §47의2 §2①19호, §19①, §28①7호, §43①8호, §43②4호, §43조③10호, §53조①7호, §62①5호, §70①6호)

4. 참고사항

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1>

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별지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2>

<별 지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7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47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설치 의무”을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의무”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사외이사수”를 “독립이사 수”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회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48조제1항제6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설치 의무”를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의무”로 한다.

제68조제1항제5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하며, “4분의 1”을 “3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542조의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42조의11의 규정 및 같은 법 제542조의12의 규정”으로 하며, “다만”을 “이 경우 같은 법 제542조의10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주권상장법인도 동일하다. 다만”으로 하고,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542조의12제2항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나목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157조의2제1항 중 “연속하는 최근 2개의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외한다)”를 “세칙으로 정하는 정기보고서”로 하고, “모두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를 “업종별 하위 3분의 1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종목지정 관련 적용례) 제47조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폐지 관련 적용례) 제4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 이후 제4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보통주권 상장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독립이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종전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은 2027년 7월 22일까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 략) 17. “사외이사”란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를 말한다. 18. ~ 29.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 16. (현행과 같음) 17. “독립이사” ---------- 독립이사 -------. 18. ~ 2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형식적 심사요건) ①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 7. (생 략) 8. 사외이사: 지주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9.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9조(형식적 심사요건)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독립이사: ---------- 독립이사 ----------. 9.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재상장 심사요건) ① 보통주권을 일반재상장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 5. (생 략)	제42조(재상장 심사요건) ① ----------.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6.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6. ---------- - 독립이사 ----------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보통주권을 분할재상장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5. ---------- -- 독립이사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보통주권을 합병재상장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 ----------.
1.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1. ---------- - 독립이사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 해당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 부문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	④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업 부문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합병 당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34조에 따라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6. ---------- -- 독립이사 ----------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관리종목지정)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제47조(관리종목지정)① ------- ---------- ---------- ----------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지배구조 미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나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로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세칙으	6. ---------- 독립이사 ----------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의무를 ---------- ----------. - ---------- ---------- ---------- ---------- ----------

현 행	개 정 안
로 정하는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 ---------- ---------- ---------- -----.
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수가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한 경우	가. ---------- ------ 독립이사 수------ ---------- ----------
나.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 ------ 독립이사-------- -독립이사---------- ---------- ---------- ---------- ---------- ---------- ----------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회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8조(상장폐지) ① ---------- ---------- ----------

현 행	개 정 안
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 독립이사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의무 ----------.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신규상장 심사요건)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68조(신규상장 심사요건)①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5. ---------- 독립이사 ----------.
6.~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사외이사) ①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77조(독립이사) ① ----------독립이사----------3분의 1----------독립이사----------.
②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65조의17제2항·제3항은 제1항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만 준용한다.	② ----------독립이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신규상장신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조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외이사가 1명 이상 있을 것. 이 경우 사외이사의 자격, 구성 등은 본국 및 상장된 적격 해외증권시장의 기준을 따르되, 「상법」 제542조의8제3	2. 독립이사 ----------독립이사----------

현 행	개 정 안
항의 사외이사 미달시 충원시기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 독립이사 ----------.
제78조(감사위원회) ① 「상법」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78조(감사위원회) ① --------독립이사----------.
② 「상법」 제542조의11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만 준용한다.	② ---------제542조의11의 규정 및 같은 법 제542조의12의 규정----------. 이 경우 같은 법 제542조의10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주권상장법인도 동일하다. 다만 ----------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542조의12제2항의 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주권등 상장법인(신규상장신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조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사를 선임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모두를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을 것. 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2. ----------

현 행	개 정 안
자격, 구성 등은 본국 및 상장된 적격 해외증권시장의 기준을 따르되, 「상법」 제542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감사위원 미달시 충원 시기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 ---------- ---------- ---------- ---------- ----------.
가.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나.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일 것	나. 독립이사----------
다.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다. ---------- 독립이사-----
라. (현행과 같음)	라. (생 략)
제157조의2(주가순자산비율 하위 기업 선정 및 공표)	제157조의2(주가순자산비율 하위 기업 선정 및 공표)
① 거래소는 연속하는 최근 2개의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외한다)상 순자산액 대비 상장시가총액의 비율(이하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모두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을 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이하 "저PBR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① ------- 세칙으로 정하는 정기보고서---------- ---------- ---------- ---------- 업종별 하위 3분의 1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 지 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9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0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연속하는 최근 2개의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외한다)”를 “세칙으로 정하는 정기보고서”로 하고, “모두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를 “업종별 하위 3분의 1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가목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62조제1항제5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제70조제1항제6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8. (생 략) 19. "사외이사"란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를 말한다. 20. ~ 48.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 18. (현행과 같음) 19. "독립이사"----------독립이사----------. 20. ~ 4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신고의무 등)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9조(신고의무 등) ① ----------독립이사----------독립이사----------.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형식적 심사요건) ① 보통주식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사외이사: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충족할 것	제28조(형식적 심사요건)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독립이사: ----------독립이사----------

현 행	개 정 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재상장 심사요건) ① 분할재상장을 하려는 재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43조(재상장 심사요건)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8조제1항제7호의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할 것	8. 제28조제1항제7호의 독립이사 요건을 충족할 것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합병재상장을 하려는 재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제1항제7호의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할 것	4. ----------독립이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과 합병(「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 합병은 제외한다)한 이후 합병기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여 분할재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8조제1항제7호의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할 것	10. ----------독립이사----------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주가순자산비율 하위 기업 선정 및 공표) ① 거래소는 연속하는 최근 2개의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외한다)상 순자산액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하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모두 업종별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을 주가순자산비율 하위기업(이하 “저PBR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47조의2(주가순자산비율 하위 기업 선정 및 공표) ① ----------세칙으로 정하는 정기보고서 ---------- 업종별 하위 3분의 1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관리종목)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제53조(관리종목)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배구조 미달: 기업의 지배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 등 세칙으로 정하는 노력을 한 사실을 종합	7. ----------

현 행	개 정 안
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가. -----독립이사---------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2조(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심사요건) ① 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2조(외국주식등의 신규상장심사요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제2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이 적격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여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본국 및 해당 해외증권시장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5. ----------독립이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신	제70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① ------

현 행	개 정 안
청인은 다음 각 호의 형식적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 제28조제1항제6호의 상근감사 선임 요건 및 제28조제1항제7호의 사외이사 선임 요건을 충족할 것	6. ----------독립이사 ---: ----------독립이사----------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44